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연구

유승관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방송영상학과 교수

I. 서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소통촉진적 매체이며 가장 개방적인 시장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표현도 다른 미디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표현이 보호받을 수는 없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특정한 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모욕 등 불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한편, 최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진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위터가 특정 국가가 요청할 때 특정 글에 대해 차단하기로 결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논란도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인터넷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은 이제 이론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선스타인(Sunstein, 200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규제’를 택할 것이냐”이다(김유승, 2006 재인용).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에서는 고유한 방식으로 인터넷 규제를 추진하면서 효과적인 합리적인 규제모델을 모색하는 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적인 규제모델의 모색에 있어서 ‘자율규제’는 효율성, 융통성, 준수의 자발성, 사회적 비용 절감, 변화하는 기술에의 적응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재진, 2009).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그 한계와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현황을 반영하여 둘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을 통한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넷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정책의 속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인터넷 타율규제와 그 한계

인터넷에서의 주요 침해유형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위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럿거스 대학의 신입생 타일러 클레멘티의 자살은 본인의 성적체성을 밝히는 친구의 트위터와 유튜브 비디오 때문이었고, 2010년 9월 23일 텍사스주 사이프러스에서는 중학생 애서 브라운이 친구들로부터 동성애자라고 온·오프라인 불링을 당하다가 집에서 아버지의 총으로 자살한 경우도 있다. 2010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인터넷 조사에 의하면 SNS 사용자 39%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경우 과거 싸이월드의 경험과 같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한상기, 2012).

이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 다양한 입법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인 린다 산체스의 사이버불링 금지법, 유럽 연합의 2009년 2월 유럽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합의한 ‘Safer Social Networking Principles’, 2011년 4월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으로, 기업들이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FTC와 상무성이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The Commercial Privacy Bill Of Rights, FTC가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면서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규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Do Not Track Me Online Act of 2011 (S. 913),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1) 사용자가 가입 전 프라이버시 설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 사용자(또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사용자의 부모)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내에 개인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소셜 네트워킹 프라이버시법(Social Networking Privacy Act)”이라고도 하는 캘리포니

아 상원 법안 242, 인터넷에서 다른 특정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California Senate Bill 1411 on Online Impersonation이 존재하고, 영국의 경우 온라인 코멘트에 대한 새로운 통지와 제거 절차(notice and take down)를 제시하고 잠재적 명예훼손 포스트 옆에 반대 의견을 보이도록 하고, 제거는 반드시 법원의 ‘제거’ 명령을 받은 뒤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이 제시된 바 있다(한상기, 2012).

다음에서는 타율규제 사례 중 잊혀질 권리(삭제요구권)와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규제의 속성과 한계를 살펴보겠다.

1. 잊혀질 권리

인터넷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글의 경우 검색된 개인 관련정보를 보여주는데 불과한데 구글을 상대로 삭제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해당 개인관련정보가 사라질 뿐 인터넷상 개인관련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진 개인관련정보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한 사람의 정보가 아니고, 최소한 두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일 경우 일방 정보 주체의 요구만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인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수 있지만, 관계된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구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가 등 삭제요구권, 즉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기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문재완, 2011). 검색결과는 인터넷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 있고, 다른 검색도구를 사용하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정책규제로 이를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은 첫 번째 유형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이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사회적 인격 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처리자의 사업노하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잊혀질 권리, 즉 삭제요구권이 인정될 경우 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관련정보지만 역사적 사실의 말소에 해당되어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다(문재완, 2011).

2.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공간에서 구가될 수 있었던 제1세대 인터넷의 자유는 상대적 익명성, 탈중앙적 구조, 다중접속, 지리적 제한의 탈피, 콘텐츠 식별체계의 부재, 암호도 구 등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탈규제 또는 규제약화에 기인한 인터넷의 자유는 제2세대 인터넷 시대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변화의 근거는 사이버 공간구조의 재구성에 의한 것이다. 각국 정부들이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사이버공간을 규제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Flamming, 1997; 조소영, 2011, p.40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이 규제가능한 공간화 되는 가운데 대두된 문제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이다.

본래 인터넷은 비익명성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치를 거쳐야만 이용자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익명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익명성의 보호를 논의할 수 있다. 익명성의 보호 여부에 대해 찬반의 입장은 계속되어 왔지만 특히 인터넷상의 익명성은 오프라인에서 표출되지 않았던 문제점 때문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특정기간 동안 특정이슈에 대한 정보 등의 게시에 대한 실명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 확대는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제44조 제5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6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동법은 개정되었는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인 제44조의5는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다는 것과 공공기관 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결국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 사업자가 확대되어 당시 활발하게 운영되

고 있던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 논의는 현재 까지도 진행 중이다. 2011년 3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에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자 및 웹사이트' 선정결과를 공시했는데,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가 선정되었다. 이는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115개 웹사이트에 신규 적용 대상인 31개 웹사이트가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포털 13개, 미디어(인터넷언론 포함) 51개, 쇼핑/경매 24개, 엔터테인먼트 22개, 인터넷서비스 21개, 생활/레저 6개, 금융 4개, 비즈니스 3개, 교육/정부기관 2개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그러나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규정 적용의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고 확대된 적용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 시행은 법리적 측면에서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김기창, 2009; 조소영, 2011 재인용),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 대상 공고에서 특이사항으로 SNS를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파악하여 제외함에 따른 동 조항의 현실적 사문화라는 예견의 목소리도 있다(조소영, 201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최근의 사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의무 강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0헌마47)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09년 12월 30일과 2010년 1월 17일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유튜브(kr.youtube.com) 게시판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해당 규정상의 본인확인제로 인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었고, 역시 2009년 12월 30일과 2010년 1월 17일 오마이뉴스(ohmynews.com)와 와이티엔(ytn.co.kr) 사이트 등의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익명으로 올리고자 하였으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 요구되는 로그인할 때 위 규정들로 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

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했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이에 위의 세 사이트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들이 궁극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1월 25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헌법재판소 공보관실,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0. 7. 8). 이 소송의 주된 쟁점 역시 익명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의 홈즈 판사는 *Abrams v. U.S.* 사건에서 일찍이 "진실에 대한 최고의 덕목은 사상의 경쟁을 통해 받아들여진 사상 그 자체의 힘이다"라고 판시한 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다양성이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정책은 태생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cIntyre* 케이스에서도 표현행위자가 자신의 실제 신분을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고 저자로서의 자율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McIntyre v. Ohio Election Commission*, 514 U.S. 334, 341(1995)), 실명강제는 저자에게 논쟁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인정할 바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표현행위자의 신분 공개를 원하는 상대방은 문제된 표현이 불법행위거나, 실명을 비롯한 표현행위자의 신분공개가 발생된 피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즉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에 의해 스스로 합헌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불온통신 위헌 판결,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이버명예훼손제, 사이버모욕제 도입 추진 등으로 입법 추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가장 편의적 입법 중 하나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 법은 다수의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1차적 당사자의 저항을 줄이고 사업자를 통해 표현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표현행위에 대한 공적 규제여부의 논란에서 벗어나 사적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헌법적 논란에서 우회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권현영, 2011).

일반적으로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ISP가 정보제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경우 제3자인 이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행한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있다(권현영, 20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소위 ‘포털사이트’ 사건을 통해 보다 상세한 수준에서 ISP의 책임범위를 확정했는데,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ISP의 작위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1)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ISP가 이러한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3)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ISP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즉,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ISP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게시물의 ‘명백한 불법성’과 ‘명백한 인식 가능성’ 및 ISP의 ‘합리적 통제가능성’을 요구함으로써 ISP의 책임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ISP의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비슷하게 통일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동조 제2항인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일정

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ISP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범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각종 의무규정과 행정형벌 규정이 있으며, 음란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 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일정한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권현영, 2011 재인용).

한편 행정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제44조의2, 3)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각종 위법사항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계물품 서류제출요구권(제64조 제1항) 및 자료·실태조사권한부여(동조 제3항), 시정조치 명령권 부여(동조 제4항), 시정조치 공개권한 부여(동조 제5항), 동 행정권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과태료 부과(제76조) 등 다양한 행정적 책임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본인확인제(제44조의5), 스팸제한(제50조)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책임을 ISP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제64조의3) 또는 과태료(제76조)를 부과할 수 있고, 저작권법과 관련하여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P2P 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제104조),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ISP에 부과하고 있다. 즉 인터넷에 있어 ISP에 대한 법적책임 구조는 대체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고, 그 입법의 양태도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강화되어 왔다(권현영, 2011). 나아가서 인터넷 포털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지우는 여러 구

정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논쟁과 위헌성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을 인정하지만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은 결국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음란, 폭력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규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규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은 기존 미디어가 독점하던 편집 자율성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통제권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수용자의 접근성도 높고, 정보유통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이 진정한 언론자유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부작용과 이에 따른 소송도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요약하면 인터넷에서의 법은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현실의 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법관할권의 문제, 불법 행위 법리는 기술적으로 입증어 어렵다는 거증 책임의 엄격성 문제,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이 용이하다는 공인과 사인의 구분 문제 등을 고려해 인터넷에서의 면책기준은 기존의 면책 기준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나친 책임과 권한을 줄 경우 정보 유통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이재진,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침해의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국가의 공적규제 또는 타율규제는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자율규제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III. 규제의 개념 및 성격*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요구를 처리하는 형태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표제 또는 정치권력 둘째, 시장 또는 금전 또는 교환력 셋째, 사회적 통제 또는 사회화, 가치, 규범에서 파생된 힘 넷째, 전문기술 또는 정보소유에 기초한 힘이다. 모스코(1988)는 위의 네 가지 형태를 이용하여 시장이 요구 해결의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수단이라면, 사회적 통제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수단이며, 대표성은 광범위한 요구를 수렴하지만, 전문지식은 엄격한 진실테스트를 거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모두가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통치형태인 규제, 경쟁, 전문위원회, 자치주의라고 설명한다(정인숙, 2007).

한편 로카연구소는 민주정부는 3P를 통해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problem), 정책(policy), 프로그램(program)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참여(participation)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인숙, 2007).

이러한 맥락에서 14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1990년대 들어와 행정학을 필두로 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통치 또는 통제의 개념을 담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도구로 평가된다. 즉, 정책목표 달성 및 정책결정권을 과거처럼 정부의 독점적 전유물로 간주할 경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려는 과정의 탐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주요 논점은 정치적 제도가 더 이상 거버넌스의 독점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 이하 부분인 규제의 개념 및 성격, 자율규제의 성격 및 방법은 필자의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4호, 2009, 51-84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임.

국가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혼합적, 잠정적, 예측불가능한 유동적 특징을 지니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박옥규, 2006; 문상현, 2003, 2005; 정인숙, 2007 재인용). 모스크의 논의와 거버넌스의 개념을 인터넷 이용자의 쌍방향성 및 참여성, 그리고 공간의 개방성과 국제성(무국경성) 등 매체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해보면, 사업자와 이용자 측면의 시장에 의한 경쟁, 국가에 의한 행정, 입법적 규제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통제유형인 자치와 전문위원회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정책의 속성 중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정책결정의 내용은 가치 배분의 변화가 된다는 점, 정책의 현실적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 행정발전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참여를 거쳐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동태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바로 가치배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그리고 타율 규제를 강화하는 속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특징이자 속성 중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공익성이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단일한 것으로 보는 실체적 견해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것으로서 공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과 타협의 소산이라 보는 복수성을 가진다고 보는 과정설적 견해가 있다. 한편 전술한 두 시각을 절충한 입장으로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체도 아니면서 또한 사익간의 타협의 소산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익과 전혀 절연된 별개의 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공익이란 공익과 사익이 겹치는 공통영역이 정책으로 설정될 공익이며, 이 영역이 클수록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면서 다수인의 공익에도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박동서, 1986).

일반적으로 현대행정국가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통제방법에는 외적통제와 내적통제로 나누어 전자에 보다 많은 비중으로 두었으나 그것은 비교적 행정이 단순하였던 입법국가시대의 이론이고, 고도의 전문성, 복잡성을 지니게 된 현대에는 외적 통제의 효과가 저하되어 불가피 내적 통제로 중점을 옮겨가고 있다. 외적통제는 사법통제, 입법통제, 옴부즈만제도 및 민중통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사법통제는 사후조치라는 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이 권위적, 금전적 압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다음으로 민중통제로 민중이란 일반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 이익집단, 여론 및 미디어, 지식인, 국민참여 등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특히 국민참여란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성 향상,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참여대상 업무의 선별적 선택과 행정의 분권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극대화가 언제나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이나 조직의 내부통제는 원래 행정부서나 조직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직업적인 윤리에 관한 것이다. 이를 인터넷에 적용시켜 보면 중요한 것은 행동을 하는 개인들 자신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통제를 강화시키지 않고 내부통제만 강화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그 주요 이유는 책임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참여, 공개에 있으며 이것이 선행되면서 자율성이 신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박동서, 1986).

중요한 점은 공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규정하는 문제는 좀 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이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념은 바람직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공동체적 가치나 규범을 우선시 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와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경쟁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로 크게 양분해 볼 수 있다. 양자는 순

수이념형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제도는 이러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또는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인쇄, 출판 등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방송에서는 공동체주의가 강했다.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모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다원성이나 정치적 독립, 질적 수월성 등을 기본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따를 때, 후자는 공공규제를 따를 때 이러한 가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을 적절히 조정하는 차원에서 정책 및 규제 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윤석민, 2005).

인터넷 미디어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공공규제와 자율규제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공통영역인 정책의 영역을 확대개발하기 보다는 공익의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 또는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위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의 보호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보호 간의 공통 또는 중첩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목적적인지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IV. 자율규제의 성격 및 방법

1. 자율규제의 성격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는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면에서 자율규제는 비규제(un-regulation) 혹은 탈규제(deregulation)와 다르다. 왜냐하면 자율규제의 구현은 정부의 규제에 완전히 독립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러한 경향은 규제대상이 표현물인 경우 더욱

그렇다(Price & Verhulst, 2000, 황승흠 외, 2004 재인용).

자율규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위임적 자율규제의 경우, 민간영역이 정부가 정의하는 틀 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요구받는 형태다. 반면 승인적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강제적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고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하는 규제를 강제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를 끌어내는 근본적인 동기는 전술한 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능력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규제는 결국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다(황승흠 외, 2004). 즉,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규제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책임 있는 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콘텐츠 분류체계(ratin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다(황승흠 외, 2004).

일반적으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 실패가 그 근거로 제시된다. 시장실패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에도 근거를 제공하지만 먼저 경제적 자율규제와 사회적 자율규제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즉, 경제적 자율규제가 일반적으로 시장 혹은 다른 경제생활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자율규제는 산업화

의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사람 혹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표현물에 대한 자율규제는 경제적 동기 뿐 아니라 미디어 규제가 지니는 사회적 동기를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규제 문제는 자유와 규제라는 양축의 사이에서 움직여왔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산업의 발달과 매우 연관되어 규제(regulation)-탈규제(deregulation)-재규제(re-regulation)의 사이클을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web 2.0 기술 하에서 모든 사람이 정보유통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도 분명 궤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강휘원(2002), 김성태(2009), 황승흠 외(2004) 등은 유사하게 정부의 공적 규제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특히 최소한의 정부규제가 이루어지되, 포털업자들이 자율 규제 시스템을 인증하여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만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한 공동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공적 운영의 책임과 산업계의 자율적 협조, 그리고 이용자의 성숙된 문화의 조화를 통해 인터넷과 포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규제(regulation)라는 강압적, 배타적인 접근에서 관리(management)라는 상호 협조적 패러다임으로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영역 중심의 자율규제 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규제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적 규제모형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정부와 민간영역의 제도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자율적인 공동규제모형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율규제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김성태, 2009).

2. 자율규제의 방법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술한 규제의 정책적 목표와 함께 정보이용자, 정보제공자, 국가 및 통제기관의 수준에서 다양한 장치들의 도입과 참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방법은 인터넷 사업자 행동강령, 자율등급 및 내용선별 시스템, 미디어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강령에 관한 것이다. 행동강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정부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자 행동강령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자행동강령의 준수를 입법화하는 위임적 자율규제와 사업자행동강령 준수를 입법화하는 대신 사업자행동강령의 준수를 근거로 정부의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강제적 자율규제방법이 가능하다. 사업자 행동강령은 사업자 자율규제의 기초로 사업자들이 법적인 혹은 법적책임 이외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자율규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적인 사업자 행동강령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사업원칙과 법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 이용자의 콘텐츠 관련 불만에 대한 처리원칙,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업자들의 명확한 책임의 제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출범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중심의 위계적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책 및 규제 기구와 원활하고도 명확한 업무 공조와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즉 업무공

조는 필요하지만 이해관계 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심의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내용의 심의는 자율규제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율적인 이중적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기구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운영기준이나 실행규칙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하며,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명문화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 중 정책위원회가 게시물 등에 대한 일반 기준을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이 있다. 이를 위해 기구는 소속 회원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이 고유의 구속력을 가지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범위 내에서의 집행이나 조치는 국가의 규제에서 독립적일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비롯하여 소외된 약자에게도 역할함이 없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직원들의 임명이나 제명 등도 명확한 규정 하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규제의 목적과 이 기구의 설립 및 운영목표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도 현재의 일부 포털사업자 이외에 일반 시민을 포함시키고, 누리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 정치인에 대한 게시물 수천 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삭제되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공인의 임시조치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인에 의한 임시조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2012년 2월 21일 ‘선거관련 인터넷정보서비스 정책결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선거후보자들로부터 검색결과 변경 요청, 연관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요청 등을 받아들

이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인터넷 포털연합 기구에 의한 자율규제 정책은 사법적 제한으로 인한 간극을 채우고, 사법적 통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해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 중 가장 성숙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근원적인 자율규제 실현의 방법으로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약 88%가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53.2%), 악성댓글(52.7%)이 가장 걱정되고, 욕설 및 비속어 남용(40.7%) 문제를 부작용으로 응답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그리고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생일수록 악플 작성의 경험이 많았고, 악플을 다는 주된 이유는 ‘건전한 반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글에 기분이 나빠져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53%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터넷 문화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주체로는 대부분(75%)이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유진호, 2012). 따라서 어린 시절의 무분별한 인터넷 중독이나 습관이 이어진다면 인터넷상에서의 욕설과 비방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소외감과 상실감을 채우는 악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초등학교생부터 미디어교육에 인터넷 이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적 심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타율적 심의제도는 인사 및 예산집행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서 독립성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심의 제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모니터링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서 수위를 넘을 경우 심의제도를 통해 보완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

신 윤리 심의규정 제11조 제1항에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용자나 사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및 심의 신청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통신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보다는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다양한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적' 모니터링과 이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필터링 등 기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불법저작물 자진삭제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포털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기술적인 필터링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적 언사를 필터링하는 방법이 강화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다양한 자율규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감독과 사후관리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유도하는 것은 기본조건이다. 이에 더해 집행주체도 언론 및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함께 자율규제 실행단계의 초기인 이용약관(규약)과 행동강령 제정, 집행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임시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법적 수단이자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자율규제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과 제4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삭제 요청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조 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고, "사적검열"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ISP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했다는 면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혼합된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의 신속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기사 자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법 제15조 제8항). 또한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법 제17조의2 제1항). 이러한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는 분쟁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광의의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보조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치이다.

V. 맺는말

지난 2월 인터넷과 SNS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국물녀사건'은 재삼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서울의 한 지하식당에서 된장국물을 들고 돌아서던 주부가 어린이와 충돌해 화상을 입게 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누리꾼들이 일방적으로 주부의 잘못을 질타했다. 그러나 주부의 해명이 나온 뒤 아이가 화상을 입은 일차적 책임은 공공예절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에게 있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왔다. 이와 비슷하게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의 경우 역시 처음에 한쪽 주장만 듣고 인터넷에서 허위주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채선당의 경우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일차적으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린 당사자와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분별없고 일방적인 댓글을 올린 많은 누리꾼들의 행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과 관련된 우리의 산업적, 규제적, 문화적 상황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볼 때 입법이나 사법을 통한 정부의 타율규제는 인터넷의 매체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한계가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은 늘었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 다양한 민간적 움직임과 포털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인터넷공간이 대중매체로서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순항하기 위한 적응기이자 과도기로 보인다. 단,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위반 시 신상필벌(信賞必罰) 차원의 제재나 구제수단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상생을 위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점증하는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방임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포털에 자율규제의 권한을 더욱 위임하고 강화하는 자율규제의 구체적 실행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포털에 명예훼손 책임을 확정판결을 감안하면 포털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심의 및 규제 기구는 필요한 일이다. 또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이나 아니냐의 문제보다 포털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에도 피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인격권이나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자율규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규제에 대한 논의는 규제의 방법 이전에 규제방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규제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에 대한 자율규제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미디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기대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이재진, 2009).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는 충분히 매력적 수단이다. 단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기구가 자율규제와 자율규제기구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가미되어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순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경쟁으로 인해 거짓된 정보가 도태되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의 속성상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상치받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자 행동강령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자 행동강령의 준수를 입법화하는 위임적 자율규제를 통해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고,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인터넷 언론이나 ISP의 경우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점차 승인적 자율규제와 자발적 자율규제 장치의 개발과 정착을 통해 규제방식을 진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결론적으로 자율규제는 국가의 공적규제 또는 타율규제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언론과 ISP에 의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하고 정착된다면 설사 과잉금지의 위험성을 내포하더라도 입법·사법적인 타율규제의 강화보다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가능성과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휘원 (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6(3), 185-205.
- 권현영 (201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10권 2호, 83-110.
- 김성태 (2009). 포털의 적절한 범규범적 책임성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공동관리”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2009년 언론학회 주최 특별세미나. 2009. 3. 20.
- 문재완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권 2호, 1-37.
- 박동서 (1986)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 유진호 (2012). ‘인터넷 문화 실태 및 시사점’. 인터넷 윤리학회 토론회. 2012. 2. 8.
- 윤석민 (2005).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재진 (2009). 『인터넷 언론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정인숙 (2007). 『방송정책 이론과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소영 (2011).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10권 2호, 39-8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 한상기 (2012). ‘SNS에서 개인권리 침해 현황 및 과제’. 인터넷 윤리학회 발제문. 2012. 2. 8.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0.7.8.
- 황승흠 · 황성기 · 김지연 · 최승훈 (2004). 『인터넷 자율규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Price, M. & Verhulst, S. (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utersloh.
- Sunstein, Cass. (2001). Republic.co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20000&dc=K05020000&boardId=1041&cp=9&boardSeq=30929>